

대전지방법원 2024. 11. 6 선고 2024가단6318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9. 25.

판결 선고 2024. 11. 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131.24㎡를 인도하고, 2023. 12. 1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,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나. 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9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백호민

별지